

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397호, **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1년 대외협력기금(국제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 초과 변경되었음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13억 8,000만원에서 16억 400만원으로 2억 2,400만원 증가하였고,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재무활동」 금액이 당초 9,100만원에서 3억 1,500만원으로 2억 2,400만원 증가하여, 20%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함.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계획			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,961	2,185	224
일반회계 전입금	500	500	-
이자등수입	81	81	-
예치금 회수	1,380	1,604	224

지출계획			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계	1,961	2,185	224
사업비	1,865	1,865	-
기본경비	5	5	-
재무활동	91	315	224 (246%)

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2억 2,3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2억 2,3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 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2억 2,300만원)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-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아울러 관련 기준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 - 따라서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이 당초보다 244.8%, 2억 2,3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계	1,961	2,185	223	
국제교류협력추진	1,865	1,865	-	-
재무활동(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)	91	315	223	244.8
보 전 지 출	91	315	223	244.8
여 유 자 금 예 치	91	315	223	244.8
행정운영경비(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)	5	5	-	-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재정균형발전담당관-5830('21. 6. 4)

○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
-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를 고려할 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관련 법령과 기준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“사업비, 기본경비, 재무활동”으로 기금운용계획상의 정책사업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, 동 기금의 정책사업은 ① **국제교류협력 추진**, ② **재무활동**, ③ **행정운영경비**로서 제출된 안건에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